감 정 평 가 서

건 명	이홍순 소유물건(2025타경62257)
의 뢰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유창우
감정서번호	HS260907-04-103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효산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박 농 규

(주)효산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김원혁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삼억팔천칠백오십만원정(₩387,500,000.-)		
의 뢰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유창우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이홍순 (2025타경62257)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9.14	2026.09.11 ~ 2026.09.14 / 2026.09.15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 1세대x-2 이	아파트	1 1세대x-2 매각지분 갑구3번 이홍순 지분 전부(2분의1) 하 여	- 백	387,500,000
합 계					₩387,5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김 원 혁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소재 "신원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신원마을고양삼송아이파크 제807동 제14층 제1402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 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본건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로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결정 이유

기준시점이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본건의 기준시점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09월 1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 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6년 09월 11일과 14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여부,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4. 그 밖의 사항

①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 등에 의거하였음

② 본건의 호별 위치 확인은 현황을 근거로 하였으며, 내부는 거주인 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탐문조사된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는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 확인 요함.

③ 본건은 2인 공유의 구분건물 1개호 중 매각지분 갑구3번 “이홍순 지분 전부(2분의 1)”에 대한 평가로서, 해당 지분에 대한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구분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 비율에 의거하여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II. 감정평가 기준 및 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1) 본건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다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바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본 건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전례 등 관련 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며, 귀 원의 요청에 따라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토지 건물 배분비율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보고서인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2021년)의 「최종 공동주택 토지 · 건물 배분비율표(아파트)」를 고려하되, 인근 토지가격수준, 입지조건과 건물의 구조, 현상, 내구연한, 본건 토지 및 건물가격형성요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III. 대상물건의 개요

1. 본건 소재 건물 개요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등]

구 분		내 용		본건 소재 건물 전경
명 칭		신원마을고양삼송아이파크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00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3로 20		
용 도 지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 지 면 적	건 물 연면적	44,933.1㎡	12,229.93㎡ (제807동)	
구 조	규 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상23층 지하2층	
사용승인일자		2012년 06월 29일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기 타 설 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		

2. 대상 부동산의 개요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등]

일련번호	동	층	호	용 도	전유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권(㎡)	전용율(%)
1	807	14	1402	아파트	116.22 *1/2	34.0789 *1/2	150.2989 *1/2	78.1922 *1/2	77.33

※ 평가대상 : 매각지분 갑구 3번 이홍순 지분 전부(2분의 1)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함.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가.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국토교통부,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례 기호	소재지 (덕양구)	동/층/호	① 전유면적 (㎡)	대지권 (㎡)	②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②/①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신원동 6**	80*/10/ 100*	116.22	78.1922	770,000,000	6,625,000	2025.02.08
							2012.06.29
B	신원동 6**	80*/4/ 40*	116.22	78.1922	760,000,000	6,539,000	2024.11.14
							2012.06.29
C	신원동 6**	80*/6/ 60*	116.22	78.1922	800,000,000	6,883,000	2024.10.12
							2012.06.29

※ 거래단가는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4자리까지 표시하였음.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상기 사례는 본건과 동일 단지 내의 거래사례로서, 부동산 거래동향을 감안하고 본건과 물적 유사성이 높다고 인정되며 등기경료된 사례인 **"거래사례 A"**을(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본건과 비교함.

사례 기호	소재지	층/호	① 전유면적 (㎡)	대지권 (㎡)	②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②/①	거래시점 / 사용승인일
A	신원동 6**	80*/10/ 100*	116.22	78.1922	770,000,000	6,625,000	2025.02.08 / 2012.06.29

나. 사정보정

본건 거래 시 개별적 사정의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사례는 실거래 신고된 사례로 인근지역의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 사례로 판단됨.

(사정보정치 = 1.000)

다. 시점수정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아파트

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25.02.08~26.09.14)

거래시점 : 2025.02.08, 2025년01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6.09.14, 2026년08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6년07월 지수를 적용함

2025.02.08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1월) : 99.8

2026.09.14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6년07월) : 100.4

시점수정치 : 100.4/99.8≒1.00601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비교항목	세부항목
(단지) 외부요인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인근 편익시설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 및 도보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차량 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계통, 접면)
		획지·단지의 여건(경사지, 고저)
	교육환경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등하교의 편리성
		인근 교육시설의 종류, 학군 선호도
	자연환경	자연환경(조망, 경관, 풍치 등),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접근성
	거주환경	거주환경 조성상태
		거주환경 저해시설(오염시설, 공해 및 소음유발시설, 위험 및 혐오시설 등)의 유무 및 거리
(단지) 내부요인	시공사의 브랜드	
	건물의 규모	총 세대수, 건물의 최고 층수
	단지의 구성 및 환경	동의 배치상태, 동간 거리, 면적별 구성비, 공간적 쾌적성(용적률, 건폐율 등)
		조경 및 녹지 등 조성상태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구조 및 재질
		현관구조(계단식, 복도식), 외부구조(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등), 내진설계, 필로티 유무
		난방방식(지역난방, 개별난방 등), 각종 설비(승강기 등)의 유무 및 상태
	건물의 노후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여부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의 상태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 주차장의 유무 및 세대 연결성,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기계식 주차장의 유무 및 비율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경로당, 유치원)의 유무 및 상태
	보안 및 유지관리	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및 관리상태
호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일조, 채광, 조망 등의 정도, 통풍의 정도
		엘리베이터, 계단으로의 접근성
		소음의 영향 정도
		사생활 침해의 정도
		공용시설·교육시설·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 편익시설의 접근성
	향별 효용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설계 및 구조	평면방식(타입 등), 방 및 화장실의 개수, 복층 유무, 1층 전용정원 여부, 다락·테라스·베란다 등의 유무
		반지하의 상태(전면 완전 노출형 등
기타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편입 여부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결정

일련번호	거래사례기호	①단지 외부요인	②단지 내부요인	③호별요인	④기타요인	누계치 (①*~*④)
1	A	1.00	1.00	1.00	1.00	1.000
		단지외부요인 : 본건과 사례는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하여 대등함. 단지내부요인 : 본건과 사례는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하여 대등함. 호별요인 : 본건과 사례는 대체로 유사함. 기타요인 : 본건과 사례는 대체로 유사함.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번호	거래사례 거래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면적비교 ①/②(㎡)		산출가액 (원)	시산가액(원) 단가(원/㎡)
					①대상	②사례		
1	770,000,000	1.000	1.00601	1.000	116.22	116.22	774,627,700	775,000,000 (@6,668,000)

매각지분 갑구3번 이홍순 지분 전부(2분의 1) :
775,000,000 × 1 / 2(이홍순 지분 전부) = 387,500,000원

※ 시산가액은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시하였음.
※ 시산단가는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4자리까지 표시하였음.

V. 합리성 검토를 위한 가격 자료

1. 감정평가 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센터]

기호	소재지 (덕양구)	동/층/호	전유면적 (㎡)	평가금액 (원)	사례단가 (원/㎡)	평가 목적	기준시점
							사용승인일자
a	신원동 6**	80*/10/ 100*	116.35	790,000,000	6,790,000	법원 경매	2026.03.31
							2012.06.29
b	신원동 6**	80*/19/ 190*	100.1	722,000,000	7,213,000	법원 경매	2025.12.22
							2012.06.29
c	신원동 6**	80*/22/ 220*	100.34	743,000,000	7,405,000	법원 경매	2024.11.29
							2012.06.29

※ 전례단가는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네자리까지 표시하였음.

2. 최근 1년간 경매통계자료

[출처 : 부동산태인]

○ 최근1년 지역/기간별 통계 (대상기간: 2025.09.15 ~ 2026.09.14)

▪ 경기

지역통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기간	용도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1년간 평균	아파트	87.18%	84.28%	3,448	84.53%	82.79%	98	80.03%	80.46%	5
	주상복합(주거)	74.86%	71.85%	136	0.00%	0.00%	0	0.00%	0.00%	0
6개월 평균	아파트	87.31%	83.81%	1,822	84.07%	81.69%	50	79.22%	79.71%	4
	주상복합(주거)	75.07%	71.91%	64	0.00%	0.00%	0	0.00%	0.00%	0

VI.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번호	소재지	전유면적(㎡)	대지권(㎡)	시산가액(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전유면적 기준단가)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00 신원마을고양삼송아이파크 제807동 제14층 제1402호	116.22 *1/2	78.1922 *1/2	775,000,000 *1/2	387,500,000	6,668,000 원/㎡
합 계					**387,500,000**	

※ 상기 감정평가액은 매각지분 갑구3번 "이홍순 지분전부(2분의1)"에 대한 평가액임.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대상물건은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구분건물로서,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전례, 인근 가격수준, 경매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HS260907-04-1039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3로 20	600 신원마을 고양삼송 아이파크 제807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23층 지2층~지1층 1층 2층 3층~23층 각	 89.17 436.92 412.85 533.42			
1	1.동소	600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4층 제1402호 1.소유권대지권	44,933.1 1 116.22x- 2 78.1922 1 ------ × -- 44,933.1 2	58.11 39.0961	387,500,000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193,750,000 건 물 : 193,75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매각지분 갑구3번 이홍순 지분 전부(2분의1)
합 계							₩387,5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소재 "신원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2층/지상23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외곽공도에 접해있으며,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한 상태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송택지개발),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3-07-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4-16)(신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4-16)(신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04-16)(신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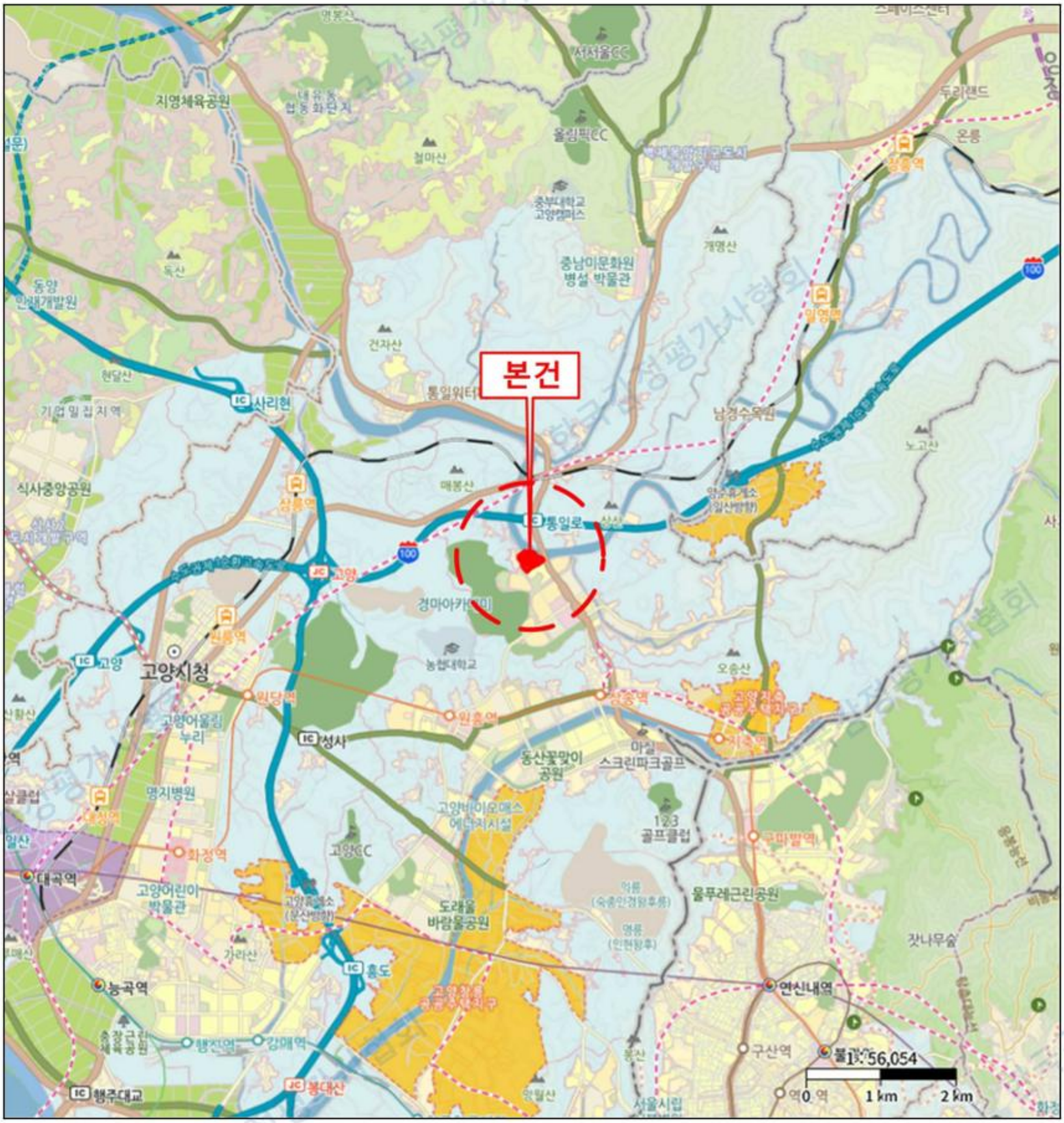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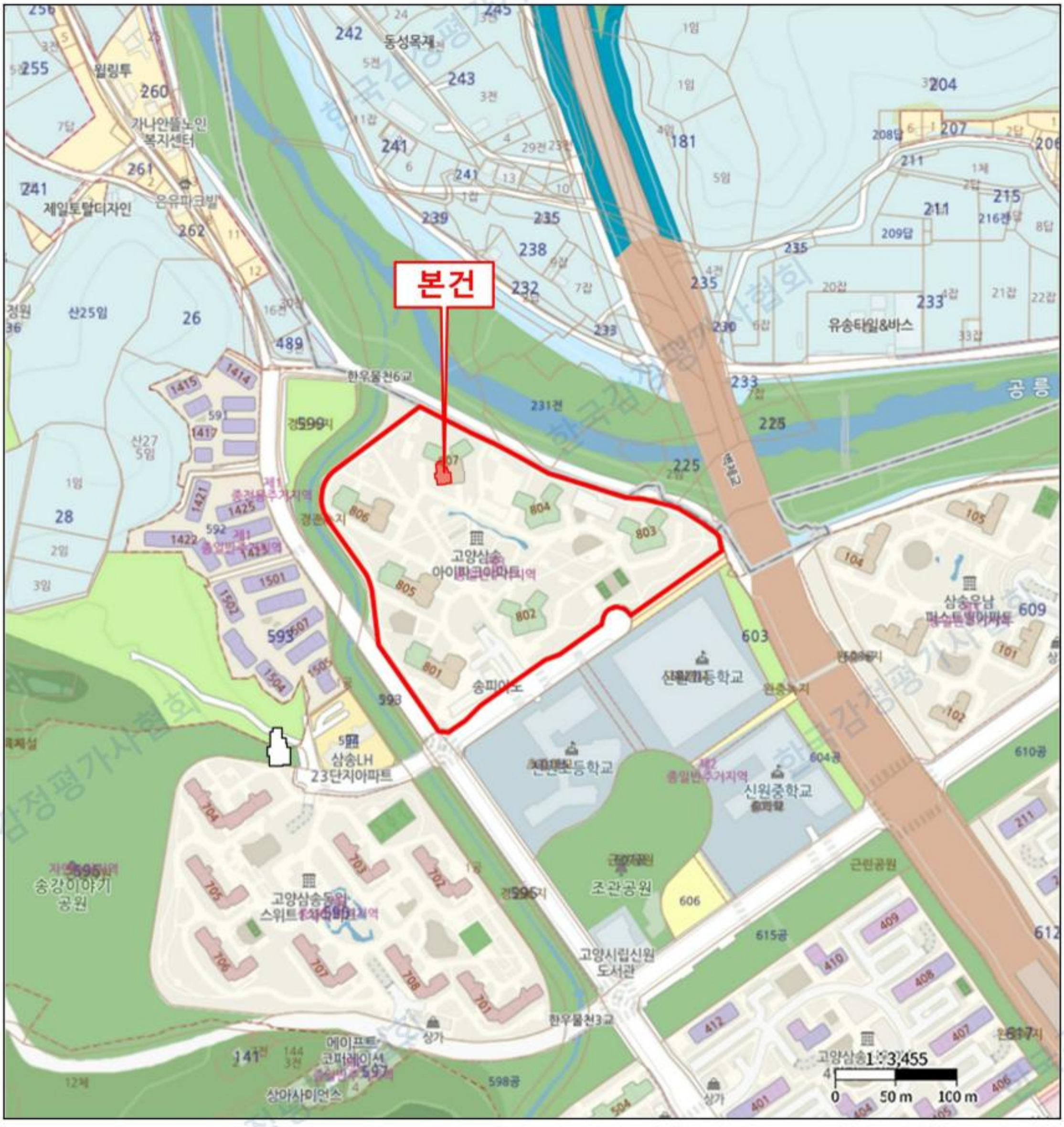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00 신원마을고양삼송아이파크 제807동 제14층 제1402호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00 신원마을고양삼송아이파크 제807동 제14층 제14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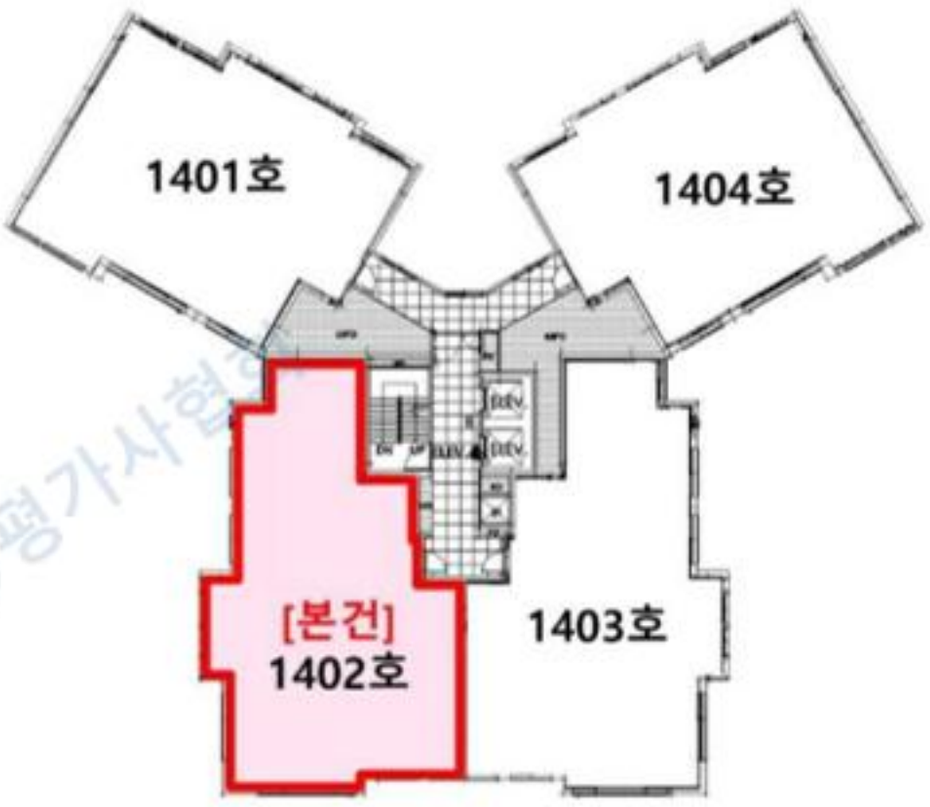


내 부 구 조 도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00 신원마을고양삼송아이파크 제807동 제14층 제1402호

[Scale : None]

<신원동 600 신원마을고양삼송아이파크 제807동 제14층 제1402호>



<제14층 호별배치도>



※ 상기 내부구조는 건축물현황도상 도면으로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참여시 별도 확인이 요구됨.

<제14층 제1402호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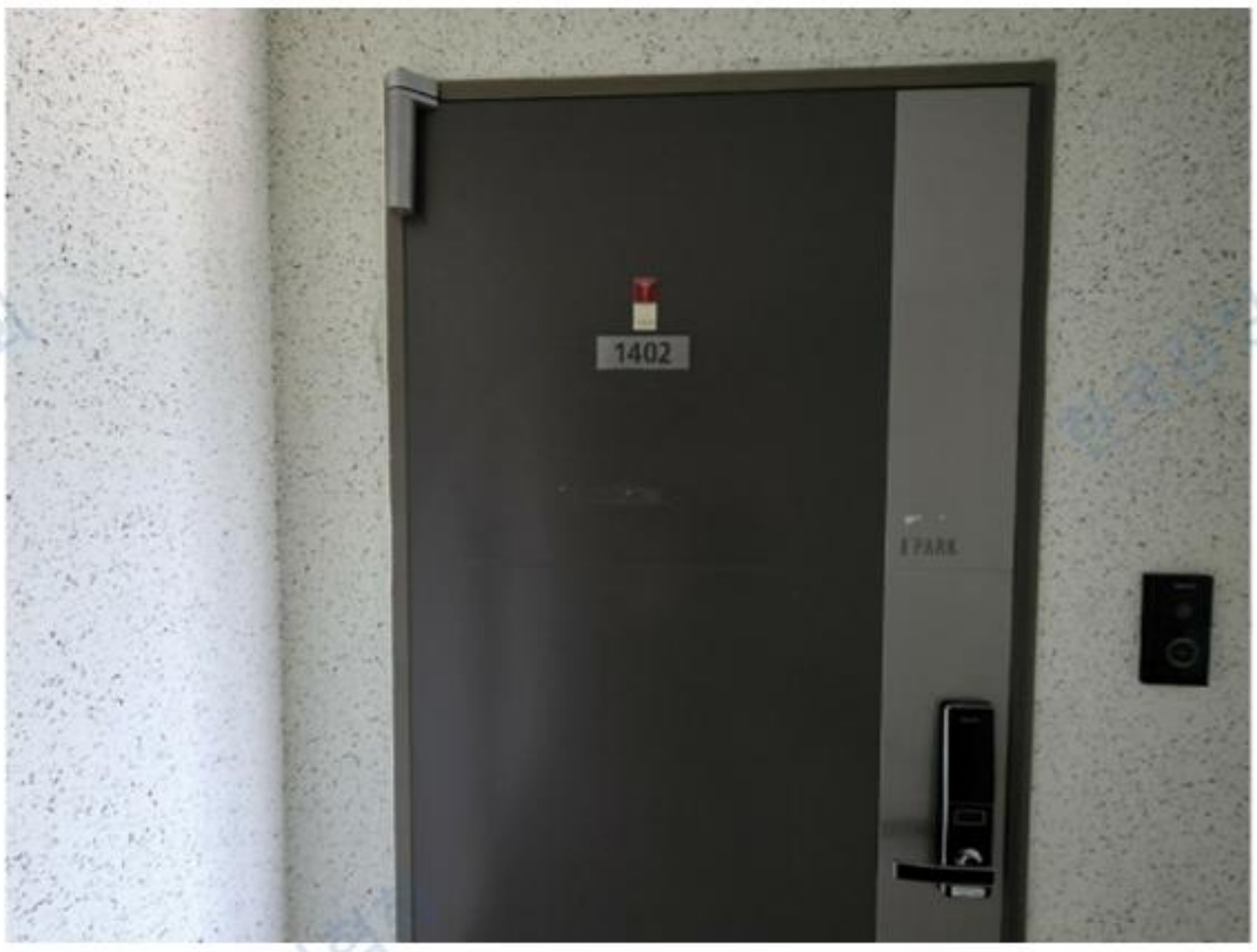
본건이 속한 단지의 전경



본건이 속한 건물의 전경



본 건물 주출입구 전경



본건 현관문 전경